


의정활동보고서



제270회 임시회(2014. 6. 10 ~ 6. 19)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9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되신 의원님
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의회 발전과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반면에 뜻을 이루지 못한 의원님들께 무슨 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으시겠지만,
다음기회를 위해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 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3선에 당선되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단없는 도정발전을 염원하는 300만 도민들의 민
심을 확인하신 만큼 누구나 살고파 하는 경북건설과 명품
교육에 큰 발자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다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소외되고 힘든 민생현장을 찾아 소통하며 열린의회 운영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9대 경상북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300만 도민과 집행부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중앙집권적인 제한된 환경에서 도민의 기대와 욕구를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효율성과 소통을 강화하는 선진 지방자치 정착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도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전 공직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경북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홍보해 주신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1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차 례

I. 개	황	275
II. 의사일정		278
III. 의안처리		283
IV. 민원처리		286
V. 본회의 보고사항		288
VI. 5분 자유발언		309
□ 이상효 의원(문화환경위원회/경주)		309
□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의성)		312

부 록

☐ 조례안(23건)	319
☐ 규칙안(1건)	475
☐ 기타안(1건)	478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70회 임시회는 2014년 6월 10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6월 1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7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6월 10일(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이상효 의원의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왕식 의원의 “제9대 의정 활동을 마치면서 도정발전 제언” 등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서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 심사가 있었으며 2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1건의 기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중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정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1건의 기타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통과되었다.

이밖에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지확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펼쳐졌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풍기인삼시장, 춘천중앙시장, 김유정 문학촌 등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 위치한 풍기인삼시장에서는 시장 상인회와 입주상인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지고 이들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마지막까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강원도 아동복지시설인 원주아동센터와 민생현장인 정선아리랑시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듣는 등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경북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하는 등 제9대 상임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와 국내 유일의 산림·휴양·교육 시설인 강원도 횡성의 「숲체원」을 방문하여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공사 안전관리 실태 등을 둘러보고 도내 기존 휴양림 등 산림자원 시설과 기관에 반영할 새로운 경영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등 마지막 제9대 상임위 현지활동에서도 더 나은 경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포항지역의 농수축산물 공급체계기반의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마지막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포항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현장, 영덕 로하스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 영덕소방서 등을 찾아 우수기를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며 또한 현장 방문 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하여 최근 유아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출생과 아울러 생애 초기 단계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 실태를 벤치마킹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며 제9대 상임위 의정활동을 마쳤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4년 6월 10일(화) 14:00

2. 회 기

가. 기 간 : 2014년 6월 10일 ~ 6월 19일(10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83회)

○ 위원회

(단위 : 건)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7	1	1	1	1	1	1	1	0	0
누 계	461	40	59	60	51	42	56	52	55	46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0(화) 14:00 (제1차)	☐ 5분 자유발언 ○ 이상효 의원(문화환경위원회/경주) ○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의성) ☐ 안건처리 ○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6. 19(목) 11:00 (제2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정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목) 11:00 (제2차)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기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0(화) 16:50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0(화) 15:00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0(화) 15:00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 행정 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0(화) 14:50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0(화) 15:00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0(화) 14:50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3(금) 11:00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Ⅲ. 의안처리

(단위 : 건)

구 분		접수 (부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안			
				원 안	수 정					
계		29 (583)	27 (570)	26 (454)	1 (110)	(6)		(4)	2 (9)	
조 례 안	소 계	25 (367)	23 (356)	22 (265)	1 (85)	(6)		(3)	2 (8)	
	의 회 제 안	7 (176)	7 (169)	7 (130)	(39)			(2)	(5)	
	도지사 제 출	12 (130)	10 (126)	9 (96)	1 (27)	(3)		(1)	2 (3)	
	교육감 제 출	6 (61)	6 (61)	6 (39)	(19)	(3)				
	규 칙 안	1 (6)	1 (6)	1 (6)						
예산·결산		(29)	(29)	(9)	(20)					
동의·승인		(45)	(45)	(43)	(2)					
건 의 안		(4)	(3)	(3)				(1)		
결 의 안		(37)	(36)	(33)	(3)				(1)	
기 타 안 (청원포함)		3 (95)	3 (95)	3 (95)						

※ ()내는 제9대 의회 누계임.

□ 제9대 의회 폐기(상임위 계류) 안건(9)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 달 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1, 전찬걸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7, 황이주 의원 외 3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13. 5. 16, 배수향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유보)
- 경북북부권내 지방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13. 8. 13, 김명호 의원 외 12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3. 10, 장경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5. 30, 도지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5. 30,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 (121)	1 (56)	(4)	(20)	(16)	(2)	(7)	(8)	(4)	(4)
의 회 운 영	(2)	(2)								
기 획 경 제	1 (14)	1 (4)		(3)	(2)	(1)	(1)	(2)		(1)
행 정 보건복지	(22)	(17)	(2)		(2)				(1)	
문 화 환 경	(8)	(6)			(1)			(1)		
농수산	(6)	(2)		(1)					(2)	(1)
건 설 소 방	(64)	(22)	(1)	(16)	(11)		(6)	(5)	(1)	(2)
교 육	(5)	(3)	(1)			(1)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 (121)	1 (121)				
의회운영	(2)	(2)				
기획경제	1 (14)	1 (14)				
행 정 보건복지	(22)	(22)				
문화환경	(8)	(8)				
농 수 산	(6)	(6)				
건설소방	(64)	(64)				
교 육	(5)	(5)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9건[조례안 18, 기타안 1(의견청취)]

제출·발의자 (접수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도지사 (14. 5. 3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14. 5. 30)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14. 5. 30)
"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 (14. 5. 30)
"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도 지 사 (14. 5. 30)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 수 산 (14. 5. 30)
도 교 육 감 (14. 5. 3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교 육 (14. 5. 30)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조례공포 사항 : 14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14. 4. 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14. 4. 21 (제3520호)
"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21호)
"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22호)
"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23호)
"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3524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14. 4. 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4. 4. 21 (제3525호)
"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26호)
"	"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3527호)
"	"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3528호)
"	"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3529호)
"	"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 (제3530호)
"	"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31호)
"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4. 17 (제3518호)
"	"	경상북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3519호)

3. 의원 신분 변동사항

소 속 위원회	성 명	사 직 서 제 출 일	사 직 허 가 일	사 직 사 유
문화환경	서 정 숙	'14. 5. 8	'14. 5. 8	• 6. 4 지방선거 입후보

※ 사직허가 근거 : 지방자치법 제77조(의원의 사직)

4. 위원회 활동 사항 : 해당없음.

5. 의원 동정

□ 제9대 도의원 “6. 4 전국지방동시선거” 결과

합 계		시장·군수		도 의 원		비 고
출 마	당 선	출 마	당 선	출 마	당 선	
38	25	4	0	34	25	

6. 기타 의정활동 사항

【도 단위 행사】

- 경북문화콘텐츠 융성 정책포럼 참석
 - 일 시 : 2014. 4. 4(금) 10:30
 - 장 소 : 안동 리첼호텔
 - 참 석 : 이시하 의장, 김명호 의원
- 제2회 경북 수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14. 4. 4(금) 13:30
 - 장 소 : 영덕군민회관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김기홍 의원
- 제1회 경상북도 경관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4. 4. 4(금)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이왕식 의원

- **창설 46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4. 4. 4(금) 15:00
 - 장 소 : 구미 민방위교육장
 - 참 석 : 이시하 의장, 윤창욱·김봉교·이태식·장영석 의원
- **제17회 영덕대게축제 참석**
 - 일 시 : 2014. 4. 4(금) 19:00
 - 장 소 : 영덕군 강구항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김기홍 의원
- **의성 청소년 페스티벌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4. 5(토) 10:00
 - 장 소 : 의성 산수유 축제장
 - 참 석 : 이왕식 의원
- **제12회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참석**
 - 일 시 : 2014. 4. 6(일) 09:00
 - 장 소 : 영주시민운동장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김종천 의원
- **제42회 보건의 날 및 제14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4. 4. 7(월) 10:00
 - 장 소 : 경산시민회관
 - 참 석 : 김세호·김영식·윤성규 의원

- 2014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4. 4. 9(수) 11:00
 - 장 소 :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
 - 참 석 : 윤창욱 · 구자근 · 박태환 · 변우정 · 심정규 ·
장영석 의원
- 2014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4. 10(목) 11:30
 - 장 소 : 경주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시하 의장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
 - 일 시 : 2014. 4. 11(금) 16:00
 - 장 소 : 충북 예산, 리솜스파캐슬
 - 참 석 : 이시하 의장
- 제4회 의성 세계연축제 참석
 - 일 시 : 2014. 4. 12(토) 13:00
 - 장 소 : 의성 위천생태하천
 - 참 석 : 나현아 · 이왕식 의원
- 제26차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연차대회 참석
 - 일 시 : 2014. 4. 12(토) 14:0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이시하 의장

- 제9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4. 13(일) 11:00
 - 장 소 :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 참 석 : 김명호 · 이영식 의원
- 2014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폐회식 참석
 - 일 시 : 2014. 4. 14(월) 14:00
 - 장 소 :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
 - 참 석 : 윤창욱 · 구자근 · 박태환 · 장영석 의원
- 2014 노인복지관 어르신 통합 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4. 4. 15(화) 10:00
 - 장 소 : 의성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왕식 의원
- 국가유공자 합동이장 안장식 참석
 - 일 시 : 2014. 4. 15(화) 11:0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윤창욱 · 구자근 · 심정규 · 장영석 의원
- 일본 독도 침탈 규탄 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14. 4. 16(수) 09:50
 - 장 소 : 울릉도, 독도
 - 참 석 : 이용진 의원

- 신용보증재단 기업인발전협의회 총회 참석
 - 일 시 : 2014. 4. 16(수) 11:00
 - 장 소 : 구미시 금오산호텔
 - 참 석 : 변우정 의원
- 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 현장방문 참석
 - 일 시 : 2014. 4. 16(수) 14:00
 - 장 소 : 청송군 일원
 - 참 석 : 김영기 의원
- 도 ↔ 문경시 일성레저산업 MOU 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4. 4. 17(목) 14:00
 - 장 소 : 문경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이시하 의장
-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경북 한마음 페스티벌 참석
 - 일 시 : 2014. 4. 18(금) 10:3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 참 석 : 김희수·장두욱 위원장, 장경식·장세현·김말분 의원
-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4. 4. 18(금)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희원 의원

- 한국전쟁전후 영천민간인 희생자 제5회 합동위령제 참석
 - 일 시 : 2014. 4. 19(토) 14:00
 - 장 소 : 영천문화원 강당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경상북도 2014 문경 66km MTB 챌린저대회 참석
 - 일 시 : 2014. 4. 20(일) 08:00
 - 장 소 : 문경 시민운동장
 - 참 석 : 이경임 의원
- 제13회 여성민속 한마당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4. 26(토) 13:00
 - 장 소 : 안동옹부공원 일원
 - 참 석 : 이영식 의원
-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 일 시 : 2014. 4. 28(월) 10:30
 - 참 석 : 이시하 의장, 박성만 · 한혜련 부의장, 박기진 · 정상진 · 장두욱 위원장, 강영석 · 박권현 · 이태식 · 정영길 · 최우섭 의원
 - 장 소 : 도청 강당 합동분향소
-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 포럼 참석
 - 일 시 : 2014. 4. 29(화) 11:00
 - 장 소 : 안동상공회의소
 - 참 석 : 이영식 의원

- 4월 대구·경북지역 발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4. 4. 30(수) 07:30
 - 장 소 : 대구은행 본점
 - 참 석 : 이시하 의장
- 수질오염사고 합동방재훈련 참석
 - 일 시 : 2014. 4. 30(수) 14:30
 - 장 소 : 성주군 선원리
 - 참 석 : 박기진 위원장
-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참석
 - 일 시 : 2014. 5. 5(월) 18:00
 - 장 소 : 의성 고운사
 - 참 석 : 이왕식 의원
-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참석
 - 일 시 : 2014. 5. 6(화) 11:00
 - 장 소 : 김천 직지사
 - 참 석 : 배수향 의원
-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 일 시 : 2014. 5. 8(목) 09:30
 - 장 소 : 도청 강당 합동분향소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김원석·이경임 의원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 일 시 : 2014. 5. 8(목) ~ 2014. 5. 27(화), 20일간
 - 장 소 : 경상북도청·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장 등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김원석·이경임 의원
- 제45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4. 5. 8(목) 10:30
 - 장 소 : 안동시민회관
 - 참 석 : 이시하 의장, 김명호·이영식 의원
- 비정상의 정상화 “생활안전의식 UP” 현장활동 참석
 - 일 시 : 2014. 5. 9(금) 14:00
 - 장 소 : 구미 중앙시장
 - 참 석 : 윤창욱·구자근·장영석 의원
-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협약식 및 현장 체험행사 참석
 - 일 시 : 2014. 5. 12(월) 19:00
 - 장 소 : 구미 천생중학교 및 구평동 일원
 - 참 석 : 이시하 의장, 윤창욱·구자근·장영석 의원
- 성주2일반산업단지 입주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4. 5. 14(수) 11: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정영길 의원

○ 구룡포항 방파제 및 호안보안공사 현장 안전점검 참석

- 일 시 : 2014. 5. 16(금) 14:00
- 장 소 : 포항시 일원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4. 5. 16(금)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희원 의원

○ 동해안발전·해양수산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4. 5. 21(수) 14:00
- 장 소 : 포항수협
- 참 석 : 장두옥 위원장

○ 제12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4. 5. 24(토) 10:30
- 장 소 : 김천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이시하 의장, 나기보·배수향 의원

○ 신세계 이마트 전국컬링대회 참석

- 일 시 : 2014. 5. 24(토) 14:00
- 장 소 : 의성 컬링센터
- 참 석 : 이왕식 의원

○ 제14회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4. 5. 25(일) 16:30
- 장 소 : 구미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윤창욱·구자근·장영석 의원

○ 도 단위 농촌일손돕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5. 27(화) 10:00
- 장 소 :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일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제4회 의병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6. 1(일) 11:00
- 장 소 :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
- 참 석 : 이시하 의장

○ 제59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 일 시 : 2014. 6. 6(금) 09:55
- 장 소 : 칠곡군 충혼탑
- 참 석 : 이시하 의장

【시·군 단위 행사】

○ 봉화로타리클럽, 창립 35주년 기념 시계탑 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4. 4(금) 11:00
- 장 소 : 봉화군 봉화IC 소공원
- 참 석 : 권영만 의원

○ 장기경로당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4. 4. 4(금) 11:00
- 장 소 : 청도군 풍각면 성곡2리 장기경로당
- 참 석 : 박권현 의원

○ 길주중학교 카누부 창단식 참석

- 일 시 : 2014. 4. 4(금) 11:00
- 장 소 : 안동시 길주중학교 체육관
- 참 석 : 홍광중 의원

○ 대한노인회 제10대 성주군지회장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4. 4. 4(금) 14:00
- 장 소 : 성주군노인회관
- 참 석 : 박기진 위원장

○ 제69회 식목일 기념 범시민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4. 4(금) 14:00
- 장 소 : 구미 및 선산버스터미널 앞
- 참 석 : 심정규 의원

○ 제18회 경북매일신문사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참석

- 일 시 : 2014. 4. 5(토) 10:00
- 장 소 : 포항 양덕스포츠타운 축구장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 제7회 의성산수유꽃 축제 참석
 - 일 시 : 2014. 4. 6(일) 10:00
 - 장 소 :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 참 석 : 이왕식 의원

- 제3회 고령군수배 궁도대회 참석
 - 일 시 : 2014. 4. 6(일) 12:00
 - 장 소 : 고령 궁도장
 - 참 석 : 곽광섭 의원

- 제64주년 순국 반공인사 위령제 참석
 - 일 시 : 2014. 4. 7(월) 11:00
 - 장 소 : 포항시 흥해읍 통일동산 위령탑
 - 참 석 : 한창화 의원

- 제42회 보건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4. 8(화) 11:00
 - 장 소 : 예천군 보건소 회의실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 제5회 전통화전놀이대회 참석
 - 일 시 : 2014. 4. 8(화) 11:00
 - 장 소 : 구미 금오산 백운재
 - 참 석 : 김봉교 의원

○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원 대회 참석

- 일 시 : 2014. 4. 9(수) 10:30
- 장 소 : 안동시민회관
- 참 석 : 김명호 의원

○ 상주상무프로축구단 홈경기 참석

- 일 시 : 2014. 4. 9(수) 19:00
- 장 소 : 상주 시민운동장
- 참 석 : 강영석 의원

○ 제34회 예천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4. 10(목) 14:30
- 장 소 : 예천군 문화회관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도기욱 의원

○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장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4. 4. 11(금) 11:00
- 장 소 : 영덕군노인회관
- 참 석 : 김기홍 의원

○ 2014년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4. 4. 11(금) 14:00
- 장 소 : 영천시청 영상회의실
- 참 석 : 최우섭 의원

○ 제3회 경산농산물사랑 복사꽃길 및 반곡지 걷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4. 4. 12(토) 09:30
- 장 소 : 경산 남산초등학교 등 남산면 일원
- 참 석 : 김세호·김영식·윤성규 의원

○ 제9회 성주참외 전국마라톤대회 참석

- 일 시 : 2014. 4. 13(일) 09:00
- 장 소 : 성주군 성밖숲
- 참 석 : 정영길 의원

○ 직지사복지재단 바자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4. 4. 13(일) 13:30
- 장 소 : 직지사 산문앞 주차장
- 참 석 : 나기보 의원

○ 저소득층 아동 초청 대게 시식회 참석

- 일 시 : 2014. 4. 14(월) 17:30
- 장 소 : 포항 대게유통센터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2014년도 풍년기원 통수식 참석

- 일 시 : 2014. 4. 16(수) 10:30
- 장 소 : 청송군 진보면 갈평저수지
- 참 석 : 김영기 의원

○ **철강공단 현장방문 근로자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4. 4. 16(수) 11:00
- 장 소 : 포스코 등 산업체 현장
- 참 석 : 장경식 의원

○ **제34회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4. 16(수) 11:00
- 장 소 : 칠곡군민체육센터
- 참 석 : 김희원 의원

○ **제17주년 영덕군민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4. 17(목) 16:00
- 장 소 :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김기홍 의원

○ **제34회 김천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4. 18(금) 11:00
- 장 소 : 김천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배수향 의원

○ **2014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 참석**

- 일 시 : 2014. 4. 19(토) 18:00
- 장 소 : 안동옹부공원
- 참 석 : 이영식 의원

○ 2014년 최무선 과학꿈잔치 및 추모제 참석

- 일 시 : 2014. 4. 21(월) 10:30
- 장 소 : 최무선과학관
- 참 석 : 한해련 부의장

○ 2014 문경 과학교육 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4. 4. 21(월) 11:00
- 장 소 : 문경여자중학교
- 참 석 : 이경임 의원

○ 제34회 영천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4. 22(화) 10:30
- 장 소 :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김수용 위원장

○ 제34회 영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4. 23(수) 11:00
- 장 소 : 영주시민회관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 제34회 문경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4. 24(목) 11:00
- 장 소 : 문경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이시하 의장

- 2014 예천 유등문화제 참석
 - 일 시 : 2014. 4. 25(금) 19:00
 - 장 소 : 예천군 한천체육공원 일원
 - 참 석 : 도기욱 의원
- 부계 ‘양산서원’ 복원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4. 4. 26(토) 11:00
 - 장 소 : 군위 부계면 양산서원
 - 참 석 : 홍진규 의원
- 2014년 좋은이웃들 봉사단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4. 4. 30(수) 14:00
 - 장 소 : 포항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이정호 의원
- 제42회 어버이날 경로행사 참석
 - 일 시 : 2014. 5. 8(목) 11:00
 - 장 소 : 울릉군 태하1리 노인회
 - 참 석 : 이용진 의원
- 심산 김창숙 선생 서거 52주기 추모식 참석
 - 일 시 : 2014. 5. 10(토) 09:00
 - 장 소 : 성주 심산기념관
 - 참 석 : 박기진 위원장

- LG주부배구대회 비산동 선수단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4. 5. 12(월) 18:00
 - 장 소 : 구미 비산나루공원 배구장
 - 참 석 : 구자근 의원
- LG주부배구대회 지산동 선수단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4. 5. 12(월) 19:00
 - 장 소 : 구미 금오여고 실내체육관
 - 참 석 : 윤창욱 의원
- LG주부배구대회 인동동 선수단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4. 5. 13(화) 11:30
 - 장 소 : 구미 인동동 누리체육공원
 - 참 석 : 장영석 의원
- 2014 영주 소백산철쭉제 참석
 - 일 시 : 2014. 5. 31(토) 10:00
 - 장 소 : 소백산 국립공원 일원
 - 참 석 : 김종천 의원
- 제14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참석
 - 일 시 : 2014. 6. 1(일) 09:00
 - 장 소 : 포항운하관 일원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장세헌·김말분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4년 6월 10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상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

존경하고 사랑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시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한 제9대 의회의 개원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9대 경상북도의회의 공식적인 마지막 의정활동이 될 제27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선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던 김관용 도지사과 이영우 교육감의 당선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270회 회기를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회의에서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민과 지역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지난 16년의 의정활동을 뒤로

하고 이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아쉬움과 후회, 만감이 교차하는 것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러나 저 자신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4선 도의원이자 지방정치인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대과없이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어주신 지역민과 도민, 그리고 진심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도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그것도 정말 이 자리에 서 본 지가 한 8년쯤 된 것 같습니다만, 처음으로 동료의원님들 앞에 서고자 함은 호사롭게 인사말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시절 국회보좌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지난 제9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직 수행에 이르기까지 지난 16년의 지방정치 활동에서 그동안 뼈저리게 각인되어 왔던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고, 이에 후배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상북도의회 발전에 위해 이것만은 꼭 전해 드려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간곡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높여가야 하는 중차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방정치인, 특히 경상북도의회 도의원이라면 언제든지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지방정치를 살리는 길이고 나아가 3백만 도민과 지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릴 때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절실히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사로이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히 자신을 버림으로써 선배가 후배들을 배려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게 마련입니다. 그를 통해 지방의회가 발전하고 대의에 충실한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내려오는 계영배라는 잔이 있습니다. 7할 넘게 부으면 모두 다 밑으로 흘러내려버리는 묘한 잔입니다. 계영배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 가지려 하다가는 자칫 다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며,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아픈 기억과 갈등을 모두 잊고 화합을 이루어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하여 다시 신발끈을 불끈 동여매고 매진해야 할 일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무릇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진정한 정치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 2014년 6월 10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 제9대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도정발전 제언 >>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5분 발언이라기보다는 본 의원이 9대 의회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재선, 3선, 4선까지 오랫동안 당선되시고 또한 경복을 위해서 힘쓰시는 의원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 더욱 더 큰 힘을 얻고 또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시고 또한 3선 연임성공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8년간 정치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군수 등 여섯 번을 낙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전에는 지역구민들의 저에 대한 신임으로 당선의 영광도 맞보고 또한 4년 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행복함을 누렸습니다. 본 의원이 천신만고 끝에 4년 전 당선될 때 그 기쁨과 또한 오늘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도 큰 과오 없이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된 것은 선배·동료 의원님들, 또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큰 덕이 아닌가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 저는 정치를 떠나서 후배양성과 또한 인재

발굴에 힘쓰면서 한 소시민으로서, 또한 경상북도를 위해서라도 만분의 일이라도 저는 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를 떠나면서 4년간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치역학상 도지사든 의원 대부분이, 대다수가 집권여당 소속인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교육감님도 보수성향이다보니 정책의 다양성, 역동성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6·4선거 때 대구시장 모 후보가 가물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멸치를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시킬 때는 가물치 한 마리가 꼭 필요합니다. 멸치란 놈은 성질이 원래 급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죽어버리지만, 하지만 가물치가 있음으로 인해 더욱 생생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적당한 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긴장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움직이면 살아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하늘의 태양은 퇴계요, 달은 남명이라 했습니다. 남명과 퇴계는 살아생전에 여덟 번의 서신왕래가 있었습니다. 남명선생께서는 퇴계선생님께 서신을 보낼 때 선생께서는 명주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삼베도 완성을 못시켰습니다. 또한 남명선생께서는 선조께서 고을, 원을 하사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명선생께서는 왕에게 서신을 보낼 때, 상소를 하면서 저는 아직도 물동이를 이고 있는 형국이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죄가 많아서 물동이를 이면 하늘을

우리러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히 말씀 입니까!

남명선생께서 평생 벼슬도 과거도 보지 않고 선비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분은 500년이 지난, 아니 1,000년이 지나더라도 남명은 하늘의 태양과 달일 것입니다. 본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선, 3선, 4선에 성공하신 선배님들께서 더더욱 겸허와 겸손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300만 경북도민을 우리러보고 300만 도민들 앞에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더더욱 빛나는 것이 바로 겸허와 겸손이 아닌가, 거기에서 바로 덕이 나오는 것이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북이 영원히 이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일류로 재도약할 것인가는 앞으로 4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항상 의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정책집행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의회도 집행부 모든 정책에 찬성, 모든 의안의 일사천리 원안통과 등은 앞으로 지양할 바랍니다. 다양한 정책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저는 충심으로 용서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출한 의성군민의 숙원사업이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상북도 건승, 경상북도 발전, 희망찬 경상북도,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 조례안 : 23건
- 규칙안 : 1건
- 기타안 : 1건

二 조 례 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정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 시설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경제위원회 9명 이상 11명 이내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9명 이상 11명 이내
4. 문화환경위원회 9명 이상 11명 이내
5. 농수산위원회 9명 이상 11명 이내
6. 건설소방위원회 9명 이상 11명 이내
7. 교육위원회 9명 이상 11명 이내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생략 1. 의회운영위원회 15명 이내 2. 기획경제위원회 12명 이내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12명 이내 4. 문화환경위원회 12명 이내 5. 농수산위원회 12명 이내 6. 건설소방위원회 12명 이내 7. 교육위원회 9명	제 2 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생략 1. 현행과 같음. 2. 9명 이상 11명 3. 9명 이상 11명 4. 9명 이상 11명 5. 9명 이상 11명 6. 9명 이상 11명 7. 9명 이상 11명 이내
제 5 조(상임위원의 임기) ①~③생략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위원 중 교육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의원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제 5 조(상임위원의 임기) ①~③현행과 같음. ④삭제

경상북도의정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정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정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보조금의 교부)”를 “(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조문 내용 중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4 조(<u>보조금의 교부</u>) 경상북도는 의정 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u>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u> 가 정하는 <u>바에 따라</u>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4 조(<u>보조금 지원</u>) <u>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 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u>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경상북도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 범위 등) ①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 ②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 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 5 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②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시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제 7 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경상북도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 8 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기념품 등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 직무와 관련된 국제행사에서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외국인이 제공하는 음식물 및 기념품
 7.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②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건전한 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21조제2호에 따라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 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의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 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지명이 어려울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1조(자문료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3조(의회규칙) 의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명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조사 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내용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소명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의원	성명	직위	정당	소속위원회
개요	목적			
	지원기관 (단체)		지원받은 내역	
	기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서명)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강의 및 회의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활동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사유				
장소				
일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1회 평균 시간 :	회 시간
대가	총액 만원(※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 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 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선거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황	명칭				
	직위		영리행위기간		
	보수	(택) 연월	원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주 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금전거래(부동산 대여)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피신고자	성명		직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 내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고자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 당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물품)			
	수량(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 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타사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금품 등 반환비용을 청구합니다. 20 청 구 자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 련 번 호	접 수 일 시	제 공 받 은 자			제 공 받 은 금 품 등	제 공 받 은 일 시	제 공 자			처 리 내 용	처 리 일 시	의 장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실·국·단·본부의 설치)”를“(실·국·본부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설도시방재국·동해안발전추진단(한시기구)”을 “건설도시방재국·동해안발전본부(한시기구)”로 한다.

제6조 중 제15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2 제목“(동해안발전추진단)”을“(동해안발전본부)”로 하며, 같은 조 각호외의 부분 중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을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

한다.

②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5 조(설·국·단·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안전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물·환경해양산업국·보건복지국·<u>건설도시방재국·동해안발전추진단(한시기구)·도청이전추진본부(한시기구)</u>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 6 조(기획조정실) (생략) 1. ~ 14. (생략) 15. <u>행정규제개혁 추진</u> 16. ~ 21. (생략) 제 13 조의 2(동해안발전추진단)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1. ~ 23. (생략)	제 5 조(설·국·본부의 설치) <u>건설도시방재국·동해안발전본부(한시기구)·도청이전추진본부(한시기구)</u> 및 제 6 조(기획조정실) (현행과 같음) 1. ~ 14. (현행과 같음) 15. <u>〈삭제〉</u> 16. ~ 21. (현행과 같음) 제 13 조의 2(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본부장은 1. ~ 23.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5,108명”을 “5,1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34명”을 “1,953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3호 별정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9급 상당
비 율	30% 이내	50% 이내	-	15% 이내	5% 이상

별표 3 중 합계란 “5,108”을 “5,127”로, 일반직란, 별정직란
및 연구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일반직	소 계	1,815	-				
	2 ~ 3급	1		1			
	3 급	11	10		1		
	3 ~ 4급	2	2				
	4급	77	55	7	5	9	1
	5급 이하	1,713	-				
	전문경력관	11	-				
별정직	소 계	14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0	-				
연구직	소 계	194	-				
	연구관	38	1		36	1	
	연구사	156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합 계	5	일반직 : 3급 2, 4급 1, 5급 이하 2		
규제개혁 추진단	1	일반직 : 4급 1	2015. 6. 30	
문화관광 체육국	2	일반직 : 5급 이하 2	2015. 12. 31	문경세계 군인체육 대회지원
동해안 발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5. 8. 31	
도청이전 추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4. 12. 31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경상
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근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1. “발전자”란 원자력 및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중 “원자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로, “도내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원자력”을 “원자력·화력”으로 “원자력관련 지역자원 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별회계의 세출은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시설 지역과 인근 지역의 방재대책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에너지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2. 도 자체사업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배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원자력발전소”를 각각 “원자력

발전소·화력발전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개발 사업”을 “에너지육성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원자력 발전과”를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에너지절약 및 홍보사업”을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조성사업”을 “조성 사업 및 민간 위탁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소 시설 주변지역과 인근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을 위하여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46조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원자력발전·화력발전소 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근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생략) 1. “발전자”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의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제 2 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발전자”란 원자력 및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를 말한다. 2.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 …… …… …… …… ……

현 행	개 정 안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 밖의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에너지 등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u>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내 기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에 한정한다.</u> 제 4 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자가 납부하는 <u>원자력관련 지역자원시설세</u> 수입으로 한다. 제 5 조(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출은 <u>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인접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u> 1.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포함)를 우선 배분하고 이를 시·군별 발전 비율에 따라 재배분	, 제 3 조(적용범위) <u>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u> <u>그 밖에</u> 제 4 조(세입) <u>원자력·화력</u> <u>지역</u> <u>자원시설세</u> 제 5 조(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출은 원자력 발전소·화력발전소시설 지역과 인접지역의 방재대책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2. 도 자체사업 35%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사용한다. 1.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인접 시·군의 지역개발 사업 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 대책에 관한 사업 3.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4. (생략) 5.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 및 홍보사업 6.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7.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8.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2. 도 자체사업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배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한다. 1.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에너지육성사업 2.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3.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와 4. (현행과 같음) 5.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6. 조성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7. 제6조제1항에 따른 8. 그 밖에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자격기준) 부지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 2 조(자격기준)</u>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와 경상북도지방별 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자는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기타 지방행정 또는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u>제 2 조(자격기준)</u> 부지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u>사람</u> 2. <u>사람</u> 3. <u>사람</u> 4. <u>그 밖에</u> <u>사람</u>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구분표에 의하여”를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전임전문직의사”를 각각 “일반임기 제의사”로 한다.

제3조 중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호에 따라”로 “별표 3”의 구분표에 의하여”를 “별표 3”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4 제3호”를 “별표 14” 비고 제3호”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월 650,0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및 전임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생략) 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제 2 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호에 따라 일반임기제의사 구분에 따라 1. (현행과 같음) 2. 일반임기제의사 :		
제 3 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영 “별표 9”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별표 3”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3 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제10호에 따라 “별표 3”에 따라		
제 4 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14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경상북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제 4 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u>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의 진료업무</u> <u>수당지급 구분표</u> (생 략)	[별표 2] <u>일반임기제공무원중 의사의 진료업무</u> <u>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u>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 규정”을 “제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u>	<u>경상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u>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 <u>기초노령연금법</u> 」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상북도 및 시·군이 부담 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 <u>기초연금법</u> 」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 3 조(부담기준 협의) 경상북도는 제2조 규정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제 3 조(부담기준 협의) 제2조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업무담당국장과 경상북도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4 조(구성) ① (생략) <u>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도 교육청 초등교육국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u>	제 4 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u>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업무담당국장과 경상북도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u>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를 “경상북도지정문화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란 도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다. 기념물 : 절터·옛무덤·조개무덤·성터·궁터·가마터·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및 경치가 좋은 곳,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지형·지질·광물·동굴·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라.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문화재자료”라 함은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5.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을 말한다.

6.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5조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외하는”을 “회의에 부치
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60인”을 “60명”
으로, “계속 재임은 3회에 한한다”를 “연임은 세 차례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치기전이라도”를 “마치기 전
이라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인이”를 “법인·단체가”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제10조제2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70인”을 “70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임자의 잔여임기로”를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
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제2조제1항”으로, “민

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외에 당해”를 “제3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으로, “자가”를 “사람이”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검토사항 등에 관하여”를 “따른 검토 등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5조에 따라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의 자”를 “그 밖의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지사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타시도로 이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없이 2년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조례 제37조의2에 따른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없이 2년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이하 가지정문화재 라 한다)”를 “(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가지정된 문화재는 6개월 이내에 지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문화재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시행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1항 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없는한 당해”를 “없는 한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 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지침서(이하“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영 제8조에 따른다.

④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도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의3(금연구역의 지정) ①「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기관장이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을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지역범위”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외곽경계”를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기관의 장은”을 “도지사는”으로, “당해 건설공사가 제2항 및”을 “해당 건설공사가 제1항 또는”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4항에 따라”로, “현지조사를 병행하

여야 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해제) ①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대하여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 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제2항에서 정한 것 이외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문화재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문화재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전수교육 보조자)”를 “(전수교육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제1항에 따른”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를 “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를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후보”를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가 다음 각 호의 1”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이때”를 “하며, 이 때”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 을”을 “보호구역을”로, “이하 같다)”를 “이하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제3호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로, “기타”를 “및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금은”을 “도지사는”으로, “교부하고 그”를 “보조금을 교부하고 도지사의”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손실보상) 도지사는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준용)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보호는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2항에 따라 해당”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를 “필요하면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①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를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리단체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직권에 의한 조사)”를 “(직권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관리단체에 대하여”를 “관리단체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뜨기전 또는 해진후”를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정기조사)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3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4. 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가”를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를”로, “지방공공단체의”를 “지방공공단체가”로,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지정문화재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준용)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조사는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42조제1항 중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한”을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규정의”를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보유자 후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u>			<u>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상북도지정문화재</u> (이하 “ <u>도지정문화재</u> ”라 한다) 및 문화재자료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경상북도지정문화재</u> ----- -----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 <u>도지정문화재</u> ”라 함은 도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옛무덤·조개무덤·성터·궁터·가마터·유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경상북도지정문화재</u> (이하 “ <u>도지정문화재</u> ”라 한다)”란 도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경상북도지사(이하 “ <u>도지사</u> ”라 한다)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현행	개정안
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민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그밖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필요한 것 ②이 조례에서 “문화재자료”라 함은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다. 기념물 : 절터·옛무덤·조개무덤·성터·궁터·가마터·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및 경치가 좋은 곳,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지형·지질·광물·동굴·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라.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문화재자료”란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4.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5.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을 말한다. 6.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1. ~ 8. (생략) 9.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u>부의하는</u> 사항	제5조(심의사항) _____. 1. ~ 8. (현행과 같음) 9. <u>그 밖에</u> _____ — 회의에 부치는 —
제6조(구성) ① 위원은 관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u>위촉한다</u>. ②위원회의 정원은 <u>60인</u>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회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임기간</u>으로 한다.	제6조(구성) ① _____ _____ 갖춘 사람 _____ —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_____ <u>60명</u> _____ _____ 연임은 세 차례만 할 수 있다. _____ _____ 전임위원의 남은기간 _____.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심의 제척)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u>마치기 전이라</u>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원이 <u>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u>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생략) ②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1. (생략) 2. 위원이 속한 <u>법인이</u>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 3. 4. (생략)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u> ② ~ ④ (생략)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심의 제척) ① _____ _____ <u>마치기 전이라</u> 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u>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u> _____ 3.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u>법인·단체가</u> _____ 3. 4.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0조(분과위원회의 설치등) ① (생략) ②분과위원회의 정원은 <u>15인</u> 이내로 한다. ③ (생략)	제10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15명</u>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u>70인</u>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④ (생략)	제11조(전문위원) ① ———— <u>70명</u> ————— —————. ————— ——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 ② ————— ——— <u>갖춘 사람</u>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u>1인</u>과 서기 <u>1인</u>을 둔다. ② ~ ④ (생략)	제12조(간사 등) ① ————— <u>1명과 서기 1명</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과 여비) 도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 ————— 범위에서 「<u>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u>」 ————— —————.
제15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인정) ① (생략)	제15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인정)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도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 지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무형 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 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외에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① (생략)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예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 민속문화재 ③ 따라 해당 ④ 제3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사람이 사람을 ⑤ 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제16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현행	개정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도지사는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문화재, 민속자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 다른 검토 등에 ————— —————. ————— 제17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 제16조에 따라 ————— —————. ————— —————. 해당 ————— —————. 이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5조에 따라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제18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시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명예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생략) ②도지사는 무형문화재 보유인정자(보유단체 포함)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시기) 제16조에 따른 해당 그 밖의 사람 —. 제19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타시도로 이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없이 2년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조례 제37조의2에 따른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없이 2년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도지사는 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도지사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0조(가지정)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이 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_____해당_____ ⑤ _____ 제16조제2항에 따라 _____ _____그 밖에 _____해당 _____ _____. _____해당 _____ 제20조(가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_____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 _____ _____. ③제1항에 따른 가지정된 문화재는 6개월 이내에 지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④ (생략) <u>제21조(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u> 도지사는 시장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④ (현행과 같음) <u>제21조(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u> ① 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문화재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시행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22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② (생략) ③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문화재자료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공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 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관리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제1항의 _____. 제2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해당 _____. ② _____ 제1항에 따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③ _____ 제1항에 따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해당 _____.

현행	개정안
④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⑥ (생략) 〈신설〉	④ _____ _____ 항에 따라 _____. ⑤ _____ 제1항에 따라 _____ _____ 없는 한 해당 _____.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지침서(이하“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영 제8조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④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도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의3(금연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제24조(수리등)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u>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u>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문화재수리용역, 시공의 평가등) ①문화재 수리업자의 기술 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 이라 한다) 또는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 라 한다)를 발주한 도지사, 시장·군수(이하 발주청 이라 한다)는 당해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수리 등)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 —————. ————— 해당 ————— —————. ————— ————— 〈삭 제〉

현행	개정안
<u>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1. 용역사업 :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수리공사 :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u>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청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학술적·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u>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자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u> <u>④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우수업자에 대해서는 우수업자 지정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u> <u>⑤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제24조의3(문화재기술위원회의설치·운영)</u> ①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문화재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문화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발주청은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술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과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이를 정한다. ④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문화재수리분야의 전문가 6인과 관계 공무원 1인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기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삭제〉

현행	개정안
<u>제26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u> ①행정기관장이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u>지역범위</u>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 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나. (생략) 2. 3. (생략) ② (생략) 1. 국가지정문화재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 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 지역은 200미터 이내.	<u>제26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u> ①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 제12조 및 제13조———— ———— ———— ———— ———— <u>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u> ————. 1. ———— 가. ———— ———— ———— ———— <u>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u> ———— 나.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2. 경상북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3.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이 마련된 문화재주변에 건설공사를 할 경우 그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하지 아니한다.	〈삭제〉
③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인접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 ———— ———— ———— 해당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④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내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 ———— ———— 각 호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⑤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지	⑤도지사는———— ———— 해당 건설 공사가 제1항 —————

현행	개정안
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면밀히 검토한 후 현지조사를 병행하여야 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제4항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 해당 — —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따라 —. 1. 2. (현행과 같음) 제26조의4(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해제) ①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대하여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현 행	개 정 안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u>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제2항에서 정한 것 이외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문화재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문화재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행	개정안
제28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 ④(생략) ⑤도지사는 <u>도지정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u> 제30조(전수교육 보조자) ①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u>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u>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u>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할 수 있다. ②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게 하기위하여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u> 전수교육 조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u>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후보</u> 전수교육 조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전수장학생) ① (생략)	제28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 ④(현행과 같음) 〈삭제〉 제30조(전수교육 조교) ① ——— ————— ————— <u>제29조제1항에 따른</u> ——— ————— <u>무형문화재</u> ——— ————— —————. ② ——— ————— ————— <u>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u> ——— ————— —————. ③ <u>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u> ——— ————— <u>범위</u> ——— ————— —————. 제31조(전수장학생)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 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등은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도지사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생략) 제32조(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도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3. 기타 도지정문화재의 관리 보존을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 ②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_____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 하며, 이 때 _____.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행정명령) ① _____ 보호구역을 _____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_____.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_____ ② _____ 제1항에 따라 _____ 각 호 _____ 각 호 _____.

현행	개정안
제33조(신고사항) 도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규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9. (생략) 제34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기타 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33조(신고사항) _____ _____ _____ _____ 해당 _____ _____ 호의 어느 하나 _____ _____ _____ . _____ _____ _____ . 1.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에 따라 _____ _____ 8. 제26조제3호에 따라 _____ _____ 그 밖에 _____ 9. (현행과 같음) 제34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_____ _____ —

현행	개정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또는 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 사용토록 한다. 제35조(손실보상)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의한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32조제2항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36조(준용)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제33조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 제35조의 규정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공개) ①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 및 그 밖의 —————. ③도지사는 ————— 보 조금을 교부하고 도지사의 —————. 제35조(손실보상) 도지사는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보호는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7조(공개) ① ————— 제2항에 따라 해당————— 없으면—————.

현행	개정안
②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 ————— 필요하면 해당 ————— ————— —————.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 ————— ————— 해당 ————— ————— ————— —————.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 제2항에 따라 ————— ————— ————— —————. ————— ————— ————— —————.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 제3항에 따라 ————— ————— ————— —————.

현행	개정안
〈신설〉 제38조(관람료의 징수)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경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지정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관람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③ ——— 관리단체는——— 해당 ——. 제39조(직권조사) 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그 밖의 ——.

현행	개정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발굴, 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뜨기전 또는 해진후에는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신설〉	②제1항에 따라_____ _____ 관리단체에게_____ _____ . _____ 긴급_____ _____ . ③제1항따라_____ _____ _____ 그 밖의 _____ _____ . _____ 해뜨기전이나 해진 후_____ _____ . ④제2항에 따라_____ _____ _____ . ⑤제3항에 따른_____ _____ . 제39조의2(정기조사) ①도지사는 <u>도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3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4. 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조사요청) ① 도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조사요청)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를 — 지방공공단체가 —————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

현행	개정안
②제1항의 조사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지정 문화재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준용) ①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5조, 제16조 및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등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4조의2의 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21조 내지 제 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그 새 소유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한 명령, 지시, 기타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②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지정 문화재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준용)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조사는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 ————— ————— —————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그 밖의 ————— —————.

현행	개정안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규정의 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표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제23조에 따라----- ----- -----, ----- ----- -----. 제43조(표창) ----- 호의 어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역건설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지역건설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

④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⑤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제10조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는 매”를 “정기회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협의회”를 “심사위원회, 협의회”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3(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역건설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지역건설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 ④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를 도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제 10조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등) ① _____ 제 10조에 따른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제12조(임기)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3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당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조(수당) 협의회 및 실무팀 회의에 참석한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임기) ----- ----- ----- 한 차례만----- -----. 제13조(협의회 운영) ① ----- 해당 ----- -----. ② 정기회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심사위원회, 협의회 ----- ----- 범위----- ----- -----.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 제11조의7,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제11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부담금”이란 법 제11조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1조”를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4까지의 규정 및 영 제15조부터 영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제11조의4까지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으로, “5로”를 “3으로”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로, “하는”을 “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1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의4제7항에 따른”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을 “처리하는 법과 영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제9조제1항 중 “영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영 제16조의2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 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경상북도광역교통 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제1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 조의6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부담금 가산금의 적용례) 제3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법 제11조의7,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1조(목적) _____ _____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_____ _____ 제11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_____ _____ _____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_____ _____ _____. 제2조(정의) _____ _____. 1.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_____. 2. _____ 법 제11조제1항 _____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제3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부터 법 제11조의4까지의 규정 및 영 제15조부터 영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법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은 부담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③ (생략) 제4조(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납부의무자가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등) ①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 중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날까지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제11조의4까지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부터 제17조————— ②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3으로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5조(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등) ① ————— 제6항까지—————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납부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는 <u>법 제11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u> 잔여부담금 및 가산금 전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변경 등) ① (생략) ②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u>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7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생략) 2. <u>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u> 가. ~ 다.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u>법 제11조의4제7항에 따른</u> _____ _____ 「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_____. 제6조(부담금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처리는 법과 영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u>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9조(공제서류의 제출) ① 영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신청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관련자료 등 제출) ①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영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도지사에게 10일 이내 법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공제서류의 제출) ① 영 제16조의2제4항 및 제5항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련자료 등 제출) ① —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② —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현행	개정안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광역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u>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u>를 설치한다. 제1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3. (생략)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제1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에 따른 <u>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 ----- ----- <u>경상북도</u> <u>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u>(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제13조(세입) ----- -----. 1.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2. 3. (현행과 같음) 4. ----- <u>그 밖의</u> ----- 제14조(세출) ----- -----. 1. (현행과 같음) 2. ----- ----- ----- ----- ----- <u>국가교통위원회</u>----- ----- -----

현행	개정안
3.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및 시·군도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범위 _____ _____.
4. 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_____ _____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징수교부금	5. 제8조제2항에 따른_____ _____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를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로 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른 위원회 중 5개를

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5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다목의 규정에 의거”를 “다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접수일로부터”를 “접수일로 부터”로, “한다”를 “하며, 위원회 최대 반복 개최 회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한다”를 “하며, 심의 등이 완료되면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 회의록을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 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건축법</u> (이하“법”이라 한다), <u>같은법시행령</u> (이하“령”이라 한다) 및 <u>같은법시행규칙</u> (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건축법</u> 」, <u>같은법 시행령</u> 및 <u>같은법 시행규칙</u> ——— _____ _____ _____ _____.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u>경상북도</u> (이하 “도”라 한다)내————— _____.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u>법제4조</u> 및 <u>령 제5조의5</u> 에 따라 경상북도건축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 <u>건축법</u> 」(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 <u>건축법 시행령</u> 」(이하 “령”이라 한다)제5조의5————— _____ _____ _____.
제4조(구성 등) ①·② (생략) 〈 <u>신 설</u> 〉 ③ (생략) ④ ~ ⑥ (생략)	제4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른 위원회 중 5개를 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1회에 한</u> <u>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u> <u>임기간</u>으로 한다. 제6조(기능) ① 도 위원회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u>각호</u>의 경미한 변 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각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구성, 운영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u>1인</u>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2.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u>1인</u>을 포함한 <u>1</u> <u>5인이내</u> 3. 4. (생략) ③·④ (생략) ⑤ (생략) ⑥·⑦ (생략)	제5조(임기) ① _____ _____ <u>한차례만</u> _____. ② _____ <u>전임위원의 남</u> <u>은기간</u>_____. 제6조(기능) ① _____ <u>각 호</u> _____.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u>각 호</u> _____. 1. ~ 4.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제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현 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_____ _____ <u>1명</u> _____ _____ _____ _____. 2. _____ _____ - <u>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u> 3.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8조(비용부담) ①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9조(회의) ①·② (생략) ③영 제5조의5 제6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회의에 참여할 위원을 20명이내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⑤ 제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생략)	제8조(비용부담) ①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_____ _____ 각 호 _____.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 다목에 따라 _____ _____.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접수일로 부터 _____ _____ 하며, 위원회 최대 반복 개최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_____ _____.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_____ _____ 1명 _____ _____.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1조(회의록) 간사는 각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u>한다</u>.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위원의 임기 중 사망, 질병 등 <u>기타</u>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5. <u>기타</u> 위원이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건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건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 5.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회의록) 간사는 각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u>하며, 심의 등이 완료되면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 회의록을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u>. 제12조(위원의 해촉) _____ _____ <u>각 호의 어느 하나</u> _____ _____. 1. ~ 3. (현행과 같음) 4. _____ <u>그 밖에</u> _____ 5. <u>그 밖에</u> _____ _____ 제12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_____ — <u>위원</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_____ _____ _____ _____ <u>포함한다.</u> _____ _____ _____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
칙”이라 한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
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를 “뜻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을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으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
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현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2호”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7조제1항”으로,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을 “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환지방식사업”이라 함은”을 ““환지방식사업”이란”으로,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효용지수”라 함은”을 ““효용지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접도율”이라 함은”을 ““주택접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수밀도”라 함은”을 ““호수밀도”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조어문 “(노후·불량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 규정”을 “제6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을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주택의 규모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현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조(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 각 호—————.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 ————— 제5조에 따라————— ————— ————— —————.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 3.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 ————— ————— ————— —————

현행	개정안
4.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2호 법 제7조제1항 법 제2조제10호
5. “환지방식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환지방식사업”이란 제4항
6. “효용지수”라 함은 분양예정 건축물을 층별, 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6. “효용지수”란
7. “주택접도율”이라 함은 정비구역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7. “주택접도율”이란

현행	개정안
8. “호수밀도”라 함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 마. (생략)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것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것	8. “호수밀도”란-----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제3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현행	개정안
3. 벽·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것 4. 2층 이하의 벽체가 목조·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것 ②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 조례가 정하는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수를 말한다. 1.·2. (생략) ③영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침실·부엌·화장실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2.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건축물 3.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삭제〉 ②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③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삭제〉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4.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 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5. 쾌적한 주거시설을 위하여 방음 · 환기·채광을 위한 적절한 시 설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 영 제10조제1항별표1의 제5호 규 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도 조례가 정 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건축계획중 법제4조의 2의 규 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한 범 위안에서 임대주택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생략) 9.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0 분의 10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 른 건축계획의 변경	〈삭제〉 〈삭제〉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 제6호 ----- 제6호 ----- -----. 1.·2. (현행과 같음)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 -----. 1. ~ 6. (현행과 같음) 7. ----- ----- 국토교통부장관----- ----- ----- 8.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10.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 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2. (생략) 제11조(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동의서식으로 하고,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 제출할 것	10.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의 변경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 —————. 1. 2. (현행과 같음) 제11조(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 —————. 1. ~ 6. (현행과 같음) 7. ————— 국토교통부 ————— ————— ————— ————— ————— ————— —————

현행	개정안
8. (생략) ② (생략) 제24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생략) ②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도 조례가 정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u>고시기준에 따른다.</u> 2. 3.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1. 임대주택의 규모는 법 제4조의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u>고시에 따른다.</u> 2. 3.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4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 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등록 등 지역 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 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 3 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제2항, 제17조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다목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조제5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5조제17호·제18호·제33호·34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⑮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소속기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u>지역교육청</u>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교육지원청</u> _____ _____.
제2조(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u>지역교육청</u>에 두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한시기구에 두는 과장·담당관 및 단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u>지역교육청</u>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_____ _____ _____ <u>교육지원청</u> _____ _____ _____ <u>교육지원청</u> _____ _____.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u>지역교육청</u>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u>지역교육청</u>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u>교육지원청</u> _____ _____ <u>교육지원청</u> _____ _____ _____.

현 행	개 정 안
제4장 <u>지역교육청</u> 소속기관 제34조(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u>지역교육청</u> 소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과 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35조 ~ 제36조 (생략)	제4장 <u>교육지원청</u> 소속기관 제34조(설치) _____ <u>교육지원청</u> _____ _____ _____. 제35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경상
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복무선서) ①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
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하며,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 3 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
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 4 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비밀엄수)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 7 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
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
야 한다.

제 9 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경상북도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제1항에 의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

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교육감(임용권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들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하게 대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5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별표 5]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 할 수 있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창안상) ① (생 략) ②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창안상)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_____ _____.
제10조(공적심사) ① (생 략) ②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유관기관·단체로부터 표창추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교육부</u>_____ _____ _____.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실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각급기관에서 교육실무직원과 임금을 주고 근로 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각급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부서·직속 기관·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4.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5. “관리총괄부서”란 교육실무직원의 인사·노무 등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교육실무직원의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7. “예산부서”란 본청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 제 3 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
- 제 4 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5 조(관리계획 수립) ①관리총괄부서는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 대상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인사, 복무기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교육실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 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안 된다.

제 6 조(채용) ①교육실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실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전보) ①교육감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보를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교육훈련)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 9 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급기관에 채용된 교육
실무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 3」의 농남중학교의 명칭란 중 “농남중학교”를 “울곡중학교”로 변경하고, 농남중학교 위치란 중 “남면 옥산길 112-11”을 “울곡동 7-142”로 변경한다.

「별표 4」의 금호여자고등학교 명칭란 중 “금호여자고등학교”를 “포은고등학교”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중학교 <table border="1"> <tr> <th>명 칭</th><th>위 치</th></tr> <tr> <td><u>농남중학교</u></td><td>김천시 <u>남면</u> <u>옥산길 112-11</u></td></tr> </table> 【별표 4】 고등학교 <table border="1"> <tr> <th>명 칭</th><th>위 치</th></tr> <tr> <td><u>금호여자고등학교</u></td><td>영천시 금호읍 성천앞길 112-53</td></tr> </table>	명 칭	위 치	<u>농남중학교</u>	김천시 <u>남면</u> <u>옥산길 112-11</u>	명 칭	위 치	<u>금호여자고등학교</u>	영천시 금호읍 성천앞길 112-53	【별표 3】 중학교 <table border="1"> <tr> <th>명 칭</th><th>위 치</th></tr> <tr> <td><u>율곡중학교</u></td><td>김천시 <u>율곡동</u> <u>7-142</u></td></tr> </table> 【별표 4】 고등학교 <table border="1"> <tr> <th>명 칭</th><th>위 치</th></tr> <tr> <td><u>포은고등학교</u></td><td>영천시 금호읍 성천앞길 112-53</td></tr> </table>	명 칭	위 치	<u>율곡중학교</u>	김천시 <u>율곡동</u> <u>7-142</u>	명 칭	위 치	<u>포은고등학교</u>	영천시 금호읍 성천앞길 112-53
명 칭	위 치																
<u>농남중학교</u>	김천시 <u>남면</u> <u>옥산길 112-11</u>																
명 칭	위 치																
<u>금호여자고등학교</u>	영천시 금호읍 성천앞길 112-53																
명 칭	위 치																
<u>율곡중학교</u>	김천시 <u>율곡동</u> <u>7-142</u>																
명 칭	위 치																
<u>포은고등학교</u>	영천시 금호읍 성천앞길 112-5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二 규 칙 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경상북도의회 규칙 제 호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등록)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당선된 자는
임기 개시전에 당선 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록) <u>의회의원 및 교육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 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u>	제2조(등록) <u>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당선된 자는 임기 개시전에 당선 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u>

二 기 타 안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시 하

2014년 6월 19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경상북도도의회 의결제시(찬성)

- 경상북도 고시 제2010-168호(2010. 5. 4 :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경상북도 고시 제2012-62호(2012. 2. 29 : 개발 계획 승인)로 고시되어 경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개발사업 지구(10.966km²) 개발은 안동·예천지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특별히 고려 하지 않고 사업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 개발용지의 일부 필지가 2개 시군 행정구역에 놓이게 됨에 이중등록 및 인·허가 시 주민들의 불편과 경계불분명으로 자치단체간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대한 안동시·예천군의 의견서 및 안동시의회·예천군의회의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어 제출됨.

- 따라서, 신도시 이주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자치단체 간 분쟁 예방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바람직한 판단됨.
- 다만,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라 향후 이주하는 주민들의 재산취득 및 일상생활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67~270회 임시회)



2014. 6 인쇄 / 2014. 6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 화 : 602-5146

FAX : 602-5140



<비매품>